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장덕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5
----------	-------

발의년월일 : 2021. 9 . .

발 의 자 : 장덕준,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김종선, 김진천,
서종수, 이민석, 조영덕,
최은하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여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 대상, 공고 및 통지 등(안 제4조 ~ 안 제5조)
- 라.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안 제6조 ~ 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해당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21. 8. 26.~ 8.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마포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역사 유적지”란 과거 우리 민족의 유산 가운데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내·국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공고 및 통지 등) 구청장은 탐방활동 운영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탐방활동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 구청장은 탐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안 제6조(안전교육), 제7조(보험가입), 제8조(재정적 지원) 등 비용 발생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기 추진 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있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김소라
연 락 처	02-3153-8984